

서울 행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9605 수정명령취소

원 고 1. 주진오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 101동 1201호
(DMC자이아파트)

2. 신주백

서울 양천구 신정2동 333 대림아파트 101동 501호

3. 왕현중

원주시 명륜1동 현대1차아파트 101동 204호

4. 이인석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 5동 505호

5. 한철호

서울 은평구 연서로44길 55, 428동 201호 (폭포동아파트)

6. 김인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87, 112동 1803호 (두산아파트)

7. 도면희

서울 용산구 이촌2동 대림아파트 102동 307호

8. 이건홍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한울마을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 107동 1304호

9. 김용석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아파트 517동 704호

10. 이종대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우성8차아파트 803동 609호

11. 김태훈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34동 1206호

(신시가지10단지아파트)

12. 장종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아파트 124동 204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신지정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4.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9. 소외 주식회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엔,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비상교육, 주식회사 지학사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학의 역사관련 전공교수 또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로서, 원고 주진오, 신주백은 주식회사 천재교육, 원고 왕현종, 이인석은 두산동아 주식회사, 원고 한철호, 김인기는 주식회사 미래엔, 원고 도면희, 이건홍은 주식회사 비상교육, 원고 김용석, 이종대는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원고 김태훈, 장종근은 주식회사 지학사의 각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라 하고, 그 출판사들을 '이 사건 출판사'라 한다)의 공동 저자들이다.

나. 피고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거쳐 2013. 8. 30.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합격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9. 11. '일부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사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

장을 밝혔고,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쳐 2013. 10. 21. 이 사건 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829건의 수정·보완권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권고'라 한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출판사와 집필진은 피고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2013. 11. 1.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수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수정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수정·보완 대조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788건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출판사를 포함한 7개 출판사에 대하여 2013. 11. 29. 수정명령을 하였다(41건 중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모두 33건이다).

바. 원고들은 위 수정명령 중 별지 기재 30개 항목에 대한 수정명령(이하 위 수정명령 중 별지 기재 30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수정명령'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3.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출판사를 포함한 7개 출판사는 2013. 12. 3. 다시 수정·보완대조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3. 12. 10. 수정·보완대조표를 승인하였고, 그 이후에도 출판사들은 단순오기 등의 오류를 다시 수정하였으며, 피고가 2014. 1. 5. 최종승인을 하자 2014. 1. 10. 한국사 교과서 완성본을 인쇄하여 각 학교현장에 보급하였다(즉 현재 일선 학교에는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수정명령 권한을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수정명령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수정명령은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i) 피고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ii)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기간은 2주 정도로, 통상의 검정절차에 비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고, (iii)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회의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거쳤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심의과정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상 하자

이 사건 수정명령 중 순번 1 내지 23번의 23건은 이미 검정절차를 통과한 교과서에 특정 관점을 강제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저자들에게 보장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정교과서의 도입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하여 수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정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정명령 중 위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그 수정명령의 내용이 지엽적이어서 검정절차를 거친 교과서를 다시 수정하도록 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과서 검정행위는 당해 도서의 교육적합성에 대한 심사 후 교육적합성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가치창설적·형성적 행위이므로(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수정명령 역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정권고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검토·자

문을 거쳤으나, 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수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가 교과서의 수정을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정권고는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표현 그대로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별도로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수정권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정명령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수정심의회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검정절차를 거친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시 교과용 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상 이에 준하는 절차가 법리적으로 요구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 심의의 절차적 적법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법리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검정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수정

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문구·문장 등의 기재 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정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므로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검정 절차를 거쳐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상 이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수정명령이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제본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수정명령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듯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 등으로, 결국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정명령에는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거친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심의절차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위원 선정방식 및 위원의 구성과 심의회의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을 나누어 검토하고, 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위원 선정방식 및 위원의 구성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는데, 각 심의회는 이 사건 규정 제1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피고가 위촉 또는 임명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교원,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등과 같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도 위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8조, 제19조). 한편 피고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할 때 피고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선정위원회는 추천후보자 중 심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심의회 위원을 임명해 왔다. 또한, 검정심사에 있어서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기초조사에서는 대상도서의 내용오류, 표기·표현오류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본심사에서는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바(제9조), 이에 따라 피고는 검정심사에 있어서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과 본심사를 담당하는 검정위원을 구분하여 임명해 왔다.

위 각 법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선정 및 그 구성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13. 10.경 한국사 교과서 관련 출판사들이 이 사건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수정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② 피고는 위 '수정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라서 이 사건 수정권고 직후에 (i) 전국의 17개 교육행정기관, (ii) 10개의 학부모 단체, (iii) 6개의 시민사회단체, (iv) 4개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v) 전국의 344개 대학교, (vi) 전국의 24개 전문대학, (vii) 8개의 연구기관, 합계 413개의 기관에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3. 11. 3.까지 총 23개의 기관으로부터 64명의 후보를 수정심의회 위원으로 추천받았다.

③ 피고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정심의회 위원 임명을 위

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선정위원회'라 한다) 선정위원회로부터 후보들을 선정받아 그 중에 수정심의회 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역시 교과용도서심의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과 본심사를 담당하는 심의위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임명하였으며, 그 직업과 전공분야에 따른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연구위원]

연번	직업	전공분야
1	대학교수	조선시대
2	대학교수	조선시대
3	역사전문기관 연구원	근대사
4	대학교수	현대사
5	고등학교 교감	역사교육
6	학부모단체 위원	북한사회문화

[심의위원, 위원장 포함]

연번	직업	전공분야
1	대학교수	고대사
2	대학교수	조선시대
3	대학교수	중세사
4	역사전문기관 연구원	근대사
5	역사전문기관 연구원	현대사
6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사	역사교육
7	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
8	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
9	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의 선정과 그 선정방식과 그 구성은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위원의 선정과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들이 별도로 피고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거나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

교과용도서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피고가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며, 검정에 관한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제21조). 한편 피고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을 기초심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과 본심사를 담당하는 검정위원으로 분리하여 연구위원회(기초심사회)는 연구위원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고, 본심사회(검정위원회)는 검정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운영해 왔다.

위 법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6, 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승철, 김재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위원선정 및 그 구성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출판사들이 피고의 이 사건 수정권고에 따른 수정·보완 대조표를 2013. 11. 1. 제출함에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들의 소속기관에 '수정심의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위원들의 출석 협조를 요청하였고, 위원들에게 이 사건 수정심의회의 개최사실을 알리고 그 출석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연구위원 6명과 위원장 1명 전원이 참석한 기초심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연구위원들은 이 사건 출판사들을 포함한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가 이 사건 수정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정사항에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여부, 출판사들이 이 사건 수정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미반영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위원들이 시대별 전공에 따라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의 내용을 단원별로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단원을 검토한 다음, 개별 검토가 끝난 단원에 대해서 연구위원 전원이 빔 프로젝트를 통한 출력화면과 인쇄물을 통해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연구위원의 전원 합의로 그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64건 도출하였고, 그 64건을 포함하여 연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본심사에 제공하였다(을 제11 내지 22호증 참조).

③ 다음으로 피고는 2013. 11. 21.부터 2013. 11. 24.까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본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들은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출판사들이 제출한 내용의 오류여부와 적절성, 수정명령을 발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의 조표 중 41건에 대하여 수정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즉 기초심사회에서 문제의견으로 제시된 64건 중 23건은 본심사회에서 제외되었다). 그 심의과정은 기초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공분야별 개별 검토 이후 전체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④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보안유지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바이엔II호텔(기초심사회)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미트 호텔(본회의)에서 합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호텔에 설치된 회의실에서 09:00경부터 24:00경까지 계속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졌다. 수정심의회 과정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1명은 교육부의 장학관으로서 수정심의회 기초심사회와 본심사회의의 간사로 활동하였고, 다른 한명은 교육부의 담당연구사 2명이 번갈아 출석하는 것으로 이들은 회의의 준비, 회의

진행의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수정심의회회의 기초심사회회의와 본심사회회의의 심의과정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검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자료인 '역사교과서 집필준거집(이하 '이 사건 준거집'이라 한다)'이 위원들에게 교부되었고, 위원들은 이를 검토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 증인 손승철, 증인 김점숙).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정심의회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및 위원의 분리구성이 모두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소집과 심의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뒤에서 검토하듯이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장이 별도로 피고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거나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회의 심의기간이 통상 8개월에 이르는데 비해서, 이 사건 수정심의회회의 심의는 약 2주 정도에 불과하여 이례적으로 짧으므로 그 심의절차가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회의는 교과서 전체의 내용을 대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심의하여 검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사건 수정심의회회의 경우 829건의 이 사건 수정권고와 그에 대하여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전제로 출판사들이 이 사건 수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

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하였기 때문에,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기간에 비하여 적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심의회 위원의 선정방식과 구성, 심의회의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이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이 사건 수정권고 829건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고, 단지 출판사들이 피고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정심의회 기초심사회에서는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에서 연구위원의 전원 합의로 그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64건 도출하였고, 다시 본심사회에서 수정권고의 내용과 출판사들의 수정·살펴보아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23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건에 대해서만 수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수정명령을 포함한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① 기초심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출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수정권고 829건과 그에 대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내용을 모두 심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수정권고 829건에 대한 심사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본심사회에서도 전체 수정권고에 대한 심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김점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② 본심사회에서는 위 64건 중에서도 그 전제가 되는 수정권고의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명령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도 하였고(손승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면),

③ 이 사건 수정심의회가 출판사들이 수정권고에 충실하게 따른 부분보다는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 심사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출판사들이 처음부터 수정권고에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 부분은 결국 출판사 및 집필진과 피고 사이에 그 수정여부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사건 수정심의회 운영목적 자체가 출판사 및 집필진과 피고 사이에 수정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발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심사방식은 합리적이고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장의 선임은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의회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 제 20조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검정 절차상의 심의회 위원장의 경우만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검정을 마친 교과서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의 경우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와 완전하게 동일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한 것이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② 이 사건 선정위원회도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을 구성할 단계부터 손승철을 2인의 위원장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사건 수정심의회에서 이의 없이 손승철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점, ③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장 선출권한'을

가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심위원회의 위원장 호선을 추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정 심의회가 그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정명령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위원회의 심의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수정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수정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정명령을 발할 것인지 여부이므로, 이는 '감독 내지는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반드시 피고에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정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및 그 구성, 소집통지와 심의방식이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적 적법성은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심의내용 등의 공개여부가 절차적 적법성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③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수정심의회 위원들 스스로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본인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수정심의회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이를 피고측에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수정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수정명령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수정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비록 교과용도서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상 하자 여부

가) 교과서의 검정과 수정에 관한 국가 재량권의 범위

보통교육 시행의 목적 및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검정신청한 도서가 교육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내지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체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참조), 교과서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적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다는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창설적인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하여 추후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국가에 부여된 위와 같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순번 1 내지 5, 20, 26번),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6 내지 9, 18, 19, 21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과소하다고 보여 그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별지 순번 10, 11번),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별지 순번 12 내지 15번),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통해 그 어법을 국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별지 순번 16, 17번), 상호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켜 국민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서술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별지 순번 22번),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 또한 함께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23번), 지도에 표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모양새 또는 사진에 담긴 정보를 역사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적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24, 25번), 주제와 인용된 도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하여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가 없고 학생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별지 순번 27번), 소주제명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라고 하는 서적의 품격이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에 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이는 것(별지 순번 28번),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으로는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연설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별지 순번 29번), 시간적 선후관계에 맞지 않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로 학생들에게 사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별지 순번 30번) 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정명령을 그 수정명령 사항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별지 순번 1 내지 5 부분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1946. 2.에 북한에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중앙권력기구의 역할을 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역할이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역사적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마치 북한이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정명령 내용' 기재와 같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성격을 더 정확히 서술하고 그 순서를 변경해야, 보다 정확하고 역사적 진실에 합치되는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오해 또는 오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서술의 순서는 저자들이 선택할 기술적 문제이고, 해당 교과서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서술의 순서까지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교과서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역사적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 인과관계를 일으키며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에 따라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지 아니할 경우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건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혼란을 줄 수 있고(이 경우가 그러하다), ② 원고들이 말하는 '교과서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은 그 표현상 취지가 모호하나, '이 부분 수정명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오해 또는 오인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서술체계상 왜곡된 측면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바로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별지 순번 2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 대상'은 역사가 김성철(1951년 사망)의 일기 '역사 앞에서'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수정명령의 내용'은 그 자료를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마치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동등하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부분 서술은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엄밀한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쓰여진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 끝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위 김성철이 자신의 일기에 주관적 감상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어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집필준거집 77면도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힐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6·25 전쟁의 발발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도록 한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집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자료임을 인식하여 본문 옆에 '자료를 쓴 이는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자료를 쓴 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 보자.'라는 문구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의 교과서 사용으로 인한 논란을 비켜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순번 6 내지 9 부분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북한이 1946. 3.경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올 뿐 그 분배된 토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확한 성격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 소유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수정명령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① 중간에 '수정명령의 내용'과 같은 서술을 넣게 되면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아 학생들의 이해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정 후 교과서를 읽어보아도 그 문장구조상 이해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고(오히려 보다 풍부한 설명으로 이해의 정도가 높아진다), ②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의 토지개혁에 따른 분배 토지에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다른 토지개혁들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의 성격을 설명해야만 하고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올라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중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즉 성격이

비슷한 여러 사건들 중 어느 사건에 대한 설명의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가 이 부분 수정명령을 하면서 그 서술의 예시로 1958년에 집단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1940년대 후반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협동화(집단농장화) 문제를 다루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기술하는 교과서의 서술방식과 맞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역사 교과서를 서술함에 있어 모든 사실들을 편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나열식 서술보다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상호 관련성이 있는 쟁점과 함께 서술하는 것이 보다 학습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특히 이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 교과서의 집필진도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사건발생의 역사적 선후에 따르지 않고 관련 쟁점을 함께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역사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서술하기도 하고 있다(예컨대 별지 순번 1 내지 5 부분에서 원고들 스스로도 반드시 역사적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서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또한 원고들은 이 부분 수정명령에 대하여 "무조건 남한의 정책은 옳았고 북한의 정책은 문제점이 많았다는 서술은 역사교육의 기본을 상실한 태도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수정명령은 '무조건 남한의 정책이 옳았고 북한의 정책은 문제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내용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에 대하여 그 분배토지의 소유권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북한 농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라는 명령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즉 분배받은 토지에 소유권의 제한이 따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당해 토지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수정 후 교과서의 해당 부분이 그러한 취

지로 읽히지도 않는다).

(4) 별지 순번 10, 11 부분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을 보면, 독립운동사에서 '한국광복군'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그 서술이 부족하거나 그 서술이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서술을 보강하도록 한 이 부분 수정명령을 적절하다고 보인다. ① 원고들은 단독주체로서 비교할 때에는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에 비해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서술이 적지 않고(순번 10번, 금성출판사), 시대와 내용을 고려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분산서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순번 11번, 두산동아), 단독주체로 비교할 때에도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에 비해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서술이 적어 이를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양 군사조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한국 광복군은 앞서 이 사건 집필기준에 그 서술이 명시되어 있는 군사조직인데 비하여, 조선의용군은 그러하지 않다), 순번 11번의 경우도 분산서술의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한국광복군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서술을 늘리거나 독립된 주제로 서술하라는 것 자체가 저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i) 어떤 주제에 대한 서술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분량 자체도 당해 주제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ii)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저자들에게 자율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쟁점에 대한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반대로 피고에게 부여된 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재량권(그 안에는 수정명령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 되고 피고

에게 교과서 검정의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

(5) 별지 순번 12 내지 15 부분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단순히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별지 순번 13번(두산동아 316면)의 소주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보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북한이 채택한 사회주의의 실체적 모습을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전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 서술을 보강하고 수정하도록 한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더 알아보기' 또는 '생각 넓히기', '자료읽기' 같은 읽기 자료의 경우 자료 자체를 충실하게 소개하면 충분하고, 이후 그에 대한 비판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토론이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비판을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서 저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이 부분은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와 같이 수정해야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보다 진실에 가깝게 학생들에게 전달된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자료 자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학습과 이해에 부족하다고 보이고, ② 위 각 부분들은 일종의 사료로서 소개된 것이지 '토론자료'로서 소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령 '토론자료'라고 하더라도 본문에 어떤 문헌을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한 이상, 그

최소한의 토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별지 순번 16, 17 부분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체로 되어 있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통상적인 국어의 어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와 같이 그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은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 함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강조·부각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북한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적대적 대결을 통해 적결해야 할 세력만으로 인식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이 행위의 주체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북한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적대적 대결을 통해 적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될 염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비록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진실인 만큼 이를 명확하지 않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진실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서 사건 발생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별지 순번 18 부분

이 부분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은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인데, 이와 같은 서술로는 '천리마 운동'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리마 운동'으로 북한의 사상 사업이 성공하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보만 전달하고 있어, 해당 면의 마지막 부분 서술 즉 '농업과 공업 간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군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공산품과 식료품이 모자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와 같은 보강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8) 별지 순번 19 부분

이 부분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은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 이는 1951년 경남 거창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인데, 이 서술에 의하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악했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므로(즉 정보의 왜곡),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 수정명령은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9) 별지 순번 20 부분

이 부분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은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 한편, 1960 ~ 1970년대 북한은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인데, 이와 같은 서술체계에 의하면 남북통일논의의 중단이 오로지 남한정부에만 있다는 취지로 읽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와 같이 '통일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서술의 위치를 수정해야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10) 별지 순번 21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민 통제가 약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라는 서술 뒤에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인바, 이러한 부가서술을 통하여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준거집도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저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격적 서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북한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공개처형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이 문제된다는 것은 모두 그 자체가 현재 진행중인 역사적 사실이므로 특별하게 북한에 대하여 공격적 서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11) 별지 순번 22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서술에서, 후단부분 즉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부분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수정하라는 것인데, 원고들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 위기의 원인이라는 점이 경제학계에서 인정되는 통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박정희 정부의 존재와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위기라는 양 역사적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8년이나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정부가 3번이나 존재하고 그들의 경제정책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추적하게 되면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위기는 박정희 정부 이전의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경제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③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라면 대체로 그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겪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경제학계에서도 통설로서 정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수정명령은 경제학계에서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서술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 즉 잘못된 서술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2) 별지 순번 23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해당 면(340면)에 '경제성장이 가져온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을 추가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인데,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338, 339면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동 등이 수치 및 그래프 등과 함께 나와 있고, 340면에서는 이 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고도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라는 소제목 하에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서술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명령의 내용과 같은 추가서술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 주는 것이 위 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 모두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 수정명령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줄이라'는 내용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 후 피고의 승인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위 시기 경제성장의 장점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부정적 측면이 더 큰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어(340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줄이고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3) 별지 순번 24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본문에 인용된 지도 내에서 천리장성의 종점을

랴오허 강 하구(능안 일대)에서 비사성(다렌)으로 옮기고, 그 표기를 성벽모양의 요철에서 점선 등으로 바꾸라는 것인바(즉 수정 전에는 천리장성이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 하구까지 요철모양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① 비록 천리장성의 종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랴오허 강 하구라는 설'과 '비사성이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쟁점인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이외에 고구려 천리장성의 위치를 지도에 표기한 다른 5종의 교과서들은 모두 통설적 견해에 따라서 랴오허 강 하구를 천리장성의 종점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수정명령과 같이 천리장성의 종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원고들 스스로도 '비사성이라는 설'이 통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정 후 교과서에서도 천리장성의 종점에 대한 대립되는 학설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② 원고들 스스로도 고구려 천리장성은 '평원토벽설'에 의한 '산성연방설'에 의한 만리장성이나 고려 천리장성과는 달리 석벽이 아닌 '토벽'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석벽과 구분되도록 요철표시가 아닌 점선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선을 표시하도록 수정명령 한 부분도 적절하다고 보인다.

(14) 별지 순번 25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에 대한 설명을 '고구려 사신'이라는 단정적 서술에서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외의 각종 학술문헌들이 위 벽화의 쟁점이 되는 두 인물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두 인물들이 역사학계에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절도가 고구려가 존속했던 650년대를 전후

해서 그려진 것이고, 위 두 인물들이 고구려의 복장인 관모와 조우관을 쓰고 환두대도를 착용했기 때문이지, 고구려의 사신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왕래한 사실이 있다는 문헌적 근거나 유물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므로, 정황상 '추정된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 ②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 후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고구려 사신'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만 그 밑의 부가 설명에서 '깃푹이 달린 질푹을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어서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장을 더하고 있어, 이러한 수정 후 표현이 학계의 통설이 위 인물들을 고구려 사신으로 보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5) 별지 순번 26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정부의 '독도통합표준홍보 지침'에 따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로 용어상의 수정을 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라는 표현은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 사료에 충실하게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수정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해당 조항을 학생 입장에서 풀어쓴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자들의 원 표현은 표준적인 용어사용과 맞지 않거나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였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16) 별지 순번 27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은 해당부분의 '탐구활동' 도표자료를 삭제 내지는 교체하라는 것인바(별지 '수정명령의 내용'에는 '장자중심상속'을 '차등상속'으로 고치라는 취

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정권고의 내용이고, 저자는 이를 수정권고에 따라 '차등상속'으로 고쳤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수정명령을 하면서 도표자료 자체를 삭제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수정 전 도표자료를 살펴보면 그 제목을 '자녀균분 상속에서 차등상속으로'라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도표의 내용과 제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도표의 내용 자체도 불명확하고 저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즉, ① 1750~1850년대의 상속형태도 여전히 '균분상속'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건수가 많고, ② '남녀차별(남자우대)'와 '남자균분·여자차별', 장자우대·여자차별'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예컨대 '장자우대·여자차별' 상속방식은 동시에 '남녀차별(남자우대)' 방식이기도 하다.], ③ '장자 아닌 자우대(여자차별)'과 '장자 아닌 자우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해당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수정명령도 적절하다.

(17) 별지 순번 28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등의 소주제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별지 '수정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수정권고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오기로 보인다). 이 부분은 소주제명의 제목이 비록 신문기사 등에 사용된 바 있는 표현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서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의 품위와 품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에 비해서 수정 후 교과서의 소주제명과 같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

어나다",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8) 별지 순번 29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소련 극동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포고문과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을 소개하고,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38도선 이북에 구축하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입장에 있었다."는 설명을 부가한 것(이 사건 수정권고에 따른 부가설명)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포고문의 실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가하라는 것이다(예시 :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표면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민위원회를 조정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 점 등 추가 설명). 이 부분은 소개된 포고문의 원문과 기존의 부가설명 만으로는 소련의 인민 위원회에 대한 장악의도를 알 수가 없어, 학생들이 소개된 포고문의 진의를 여전히 오해할 수가 있으므로(저자도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수정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수정명령과 같은 보완설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수정명령도 적절하다.

(18) 별지 순번 30 부분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은 경성방직(1919년 설립), 평양메리야스 공장(1906년 경 설립)의 설립시기를 감안하여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맞도록 문장을 수정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기존의 서술에 의하면 경성방직과 평양메리야스 공장이 1923년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설립된 것처럼 읽혀 학생들에게 설립시기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위 수정명령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시기를 다루는 단원의 내용과 무관한 사실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수정명령을 통하여 저자가 이미 해당 부분에서 언급한 경성방직과 평양메리야스 공장의 설립시기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변경하라는 것으로, 결국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물론 내용상의 하자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김 경 란



판사

김유정

김 유 정



판사

안좌진

안 좌 진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 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합격결정)

-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위원장 등)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 한편, 1960 ~ 1970년대 북한은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

-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각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정)

-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별 지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1	금성출판사 368 ~ 371	<p>[본문]</p> <p>▪368 ~ 371쪽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 :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367쪽 하 1~2행] 반면,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1946).</p> <p>[371쪽 6~12행] 1946년 2월 남한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무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북한 정부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일성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되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p> <p>[371쪽 8~9행] 한편, 유엔이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으로는 정부 수립에 필요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p> <p>[371쪽 보조단 사진 설명]</p> <p>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p>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5· 10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① 예시 :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음을 명시</p> <p>②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신탁통치 문제'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6쪽) 또는 '좌우 대립과 마·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7쪽)에 서술</p>	<p>[367쪽 하 1~2행]</p> <p>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p> <p>[371쪽 6~12행]</p> <p>1946년 2월 남한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무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북한 정부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일성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였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p> <p>[371쪽 보조단 사진 설명]</p> <p>* 본문 내용을 수정하면서 중복이 생겨 사진 설명을 교체함.</p> <p>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경축 대회(1946. 2.) : 북한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수립 경축 대회(1946. 2.) : 북한 정권의 모태가 되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군대를 창설하는 등 국가 건설의 기반을 다진 후 1948년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모든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고 해체되었다. 사진을 통해 1946년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위원회는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p>
2	미래엔 317	<p>[탐구활동] : 6·25 전쟁의 증언 - ... 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p>	<p>제시된 자료는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 필요 예시 : 정찰명령 제1호(1950.6.18.), 전투명령 제1호(1950.6.22.) 등</p>	<p><사료 읽기> 북한군의 전투 명령 전투 명령 제1호(1950. 6. 22.) 1. 아군(인민군 제4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적(국군)의 7사단 1연대가 방어한다. 2. 본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 아장동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근 임무로서 마지리, 536.2 고지를 점령하고 최후 임무로는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차후로는 의정부, 서울 방향에 지원한다. 8. 제5보연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와 함께 18보연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지리, 동명천 계선에서 전치 진입을 준비한다. 9. 군단포 대대는 나의 수하 대대로 한다. 포병 준비 사격은 30분간이며, 그중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 사격으로 한다. 포사격 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 24시까지이</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다.</p> <p>14. 사단 지휘소는 협곡이며 감시소는 (03.31)인바, 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 방향이다.</p>
3	<p>비상교육 346 ~ 353</p>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p>: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우리 민족의 반응’ 소주제 마지막 단락(348쪽) 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 마지막 단락(349쪽)에 서술</p>	<p>내용의 흐름과 시간 순서상 348쪽이나 349쪽 마지막 단락보다는 349쪽 첫 단락에 추가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봄. 이에 따라 353쪽의 중복되는 서술을 삭제하고 재서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9쪽 1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임시 인민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53쪽 12줄 북한은 소련의 후원 아래 발족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친일파를 축출하고,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4	<p>지학사 348 ~ 349</p>	<p>① 346~349쪽 내용 제시 순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및 신탁 통치안 결정(346쪽) →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및 휴회(346쪽) → 이승만의 정읍 발언(347쪽) →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347쪽) →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348</p>	<p>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좌우합작운동,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북협상 추진,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p>	<p>① 346쪽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다’ 두 번째 문단 뒤에 연결: 이 소식이 전해지자 ……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조선 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을 지지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쪽) → 남북 협상 추진 (348쪽) → 5·10 총선거 실시(349쪽) → 제주 4·3 사건 및 여수·순천 사건 (349쪽) → 대한민국 정부 수립(349쪽) → 1946년 이후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349쪽)</p> <p>② 349쪽 하단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서술: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간 북한은 이듬해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p>	<p>정 필요</p> <p>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다.’ 소주제(346쪽)의 두 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p>	<p>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p> <p>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1946. 3.). (이하 교과서 원본과 동일)</p> <p>② 349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두 번째 문단 수정: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간 북한은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1948. 9.).</p>
5	천재교육 305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 서술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마·소공동위원회 개최,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추진, 이승만의 정읍 발언, 5·10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 대립’ 소주제 마지막 단락(305쪽)에 추가 서술 필요</p>	(본문에 추가 서술) 이 무렵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6	금성출판사 373	[본문] 농지개혁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	* 보조단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추가함.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p>	<p>을 서술 필요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p>	<p>* 무상 분배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p>
7	두산동아 276	<p>[본문] · 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p>	<p>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p>	<p>· 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4줄)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분배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매매나 소작 또는 저당을 금지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 273쪽 본문 중 11줄 (본문 중 11줄) 무상 몰수·무상 분배 → ‘무상 몰수·무상 분배’ (보조단)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의 경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으며,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
8	비상교육 353	[본문] ▪ 북한 정부의 수립 : 북조선 임시 위원회는 친일파들을 축출하였으며,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이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날개에 보충 설명을 추가함. 집단 농장화되었다는 부분은 360쪽 13줄에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시기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고려하여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보충함.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은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에 대해 매매, 소작, 저당 등을 금지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두었다.
9	천재교육 311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용어 설명에 추가 서술)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
10	금성출판사	[본문] 1~10행	한국광복군이 독립운동사	본문 한국광복군 추가 서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350	<p>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은 4개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에는 화북으로 복상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김원봉과 이범석,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 2, 3지대로 개편되었다.</p> <p>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 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p>	<p>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광복군 서술은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p>	<p>술</p> <p>2. 소주제명 통합 : 349쪽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350쪽 ‘■ 한국광복군’을 통합하여 350쪽 소주제명을 삭제하고 349쪽 소주제명을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으로 수정함.</p> <p>3. 350쪽 보조단에 사료 추가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 추가</p> <p>4. 350쪽 하단의 성명서 사진 삭제하고 상단의 한국광복군 배지 사진 이동</p> <p>5. 355쪽 3번 자료(대일 선전 성명서)는 본문 해석으로 통일하여 수정함.</p> <p>[350쪽 1~10행] 한편,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대로 <u>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u> 한국광복군은 4개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에는 화북으로 복상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김원봉과 이범석,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 2, 3지대로 개편하면서 병력이 증강되었다. <u>한국광복군은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u> 특히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 병사나 적 후방의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출·투항하여 한국광복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데, 1943년에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한 포로 심문, 정보 수집, 선전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 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p> <p>[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1941)] 우리는 삼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격파(擊敗)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며,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하나의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심국(추축국)에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 병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이미 얻은 권익을 존중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驅逐)하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血戰)한다.
11	두산동아 247 ~ 248	[본문] · 247쪽 (항일 유격 전쟁	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이 본문에 거의 없으며, 생각	· 248쪽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을 벌이다) [본문] · 248쪽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 항일 유격대 및 동북 항일 연군 활동과 한국 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 불균형</p>	<p>넓히기, 탐구활동 등에 분산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광복군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수정 필요 예시 : 한국광복군 활동을 독립된 주제로 본문에 서술</p>	<p>(9줄) 하지만 많은 조선 의용대원들은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 248쪽 (임시 정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다) - 독립 주제 설정 (14줄)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 크게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3개 지대로 확대 개편하고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을 파견하였다. 창설 당시 재정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광복군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은 재정 지원의 대가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갔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부득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지휘권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마침내 1945년 4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생각넓히기) - 1944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과 교섭하여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을 폐기하고 한국 광복군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p>
12	금성출판사 407	<p>[참고 자료 및 특집] ▪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 <더 알아보기>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으로</p>	<p>참고 자료의 서술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주체사상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였으며,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p>	<p>더 알아보기 4~9행 <더 알아보기>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 체계화</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 체계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1997년에는 ~ 사용하고 있다.</p>	술	<p>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 사용하고 있다.</p>
13	두산동아 315	<p>[본문] · 315쪽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 ...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p> <p>※ 생각 넓히기 : 조선 민족제일주의로 민족 명절을 부활시키다.</p>	<p>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① (소주제명 수정)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예시② : ‘생각 넓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서술 [참고] <김정일이 민족을 강조한 이유>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단순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데 있다.” (김일성,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89)</p>	<p>(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생각 넓히기) (5줄) 그의 논점은 조선 민족이야말로~우월하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p>
14	천재교육	자료 읽기 : ‘주체’의 강조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	(도움 글에 추가 서술)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318	와 김일성 우상화	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도움 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
15	천재교육 329	(도움 글) 자료의 ‘우리당’이란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 지향하였다. 또 외세와 남한의 통일 반대 세력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도움 글의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를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을 서술	(도움 글에서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의 문장을 삭제함) (도움 글에 추가 서술)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16	두산동아 320	[본문] · 320쪽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다) :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	(22줄) 게다가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17	지학사 392	이명박 정부 수립 후에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실시하여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	이명박 정부 수립 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8	두산동아 286	[본문] · 286쪽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한 점,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	(11줄)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달성하였다.		
19	미래엔 318	[아! 그럴구나] 코너 서술 -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 함흥, 영광, 대전 등에서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건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0	비상교육 389	[본문] ▪ 남북의 대립 :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 한편, 1960 ~ 1970년대 북한은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를 '남북의 대립' 소주제 마지막으로 이동	▪389쪽 5줄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북한도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을 일으켜 남북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남과 북에서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기도 하였다.
21	천재교육 356	~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본문 서술 보완) ~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 제시	고 있으며,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2	금성출판사 399	<p>[본문]</p> <p>▪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p> <p>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 심화되었다.</p>	<p>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과 1997년 외환 위기는 인과 관계가 부족하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삭제</p>	<p>17~20행</p> <p>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또한, ~ 심화되었다.</p>																																
23	미래엔 340	<p>(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p> <p>: 단원 주제 제목 표기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다, 고도 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p>	<p>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와 문제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므로 경제 발전 성과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p> <p>예시 :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동시대 북한과의 소득 비교 등</p>	<p>[1. 보조단에 도표 추가]</p> <table border="1"> <caption>여러 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한국</th> <th>미국</th> <th>일본</th> </tr> </thead> <tbody> <tr><td>1961~65</td><td>9.2</td><td>6.6</td><td>6.5</td></tr> <tr><td>1966~70</td><td>10.4</td><td>4.2</td><td>3.0</td></tr> <tr><td>1971~75</td><td>7.9</td><td>2.3</td><td>2.2</td></tr> <tr><td>1976~80</td><td>7.0</td><td>3.7</td><td>3.0</td></tr> <tr><td>1981~85</td><td>7.8</td><td>2.6</td><td>1.2</td></tr> <tr><td>1986~90</td><td>9.5</td><td>3.3</td><td>2.6</td></tr> <tr><td>1991~99</td><td>7.5</td><td>3.2</td><td>1.5</td></tr> </tbody> </table> <p>▲ 여러 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p> <p>[2.경제 발전 성과에 대한 소주제 내용 추가]</p> <p>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다 우리나라가 1960~1970년대의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9년 1인당 국민소득은 1,676달러로, 제1차</p>	연도	한국	미국	일본	1961~65	9.2	6.6	6.5	1966~70	10.4	4.2	3.0	1971~75	7.9	2.3	2.2	1976~80	7.0	3.7	3.0	1981~85	7.8	2.6	1.2	1986~90	9.5	3.3	2.6	1991~99	7.5	3.2	1.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1961~65	9.2	6.6	6.5																																	
1966~70	10.4	4.2	3.0																																	
1971~75	7.9	2.3	2.2																																	
1976~80	7.0	3.7	3.0																																	
1981~85	7.8	2.6	1.2																																	
1986~90	9.5	3.3	2.6																																	
1991~99	7.5	3.2	1.5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87달러에 비해 무려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보다 매우 높았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에 시달리던 국민의 생활이 크게 윤택해졌다.</p> <p>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확대도 문제였다.</p> <p>한편, ~~~</p> <p><남북한 1인당 국민 총생산 비교> 도표와 설명은 350쪽에 있음.</p>
24	금성출판사 55	<p>[지도.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p>: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지도 中 천리장성 위치 및 표현법</p>	<p>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고려의 천리장성과는 달리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성곽 표시를 삭제하고 점선 등으로 표시</p> <p>②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천리장성은 동북 기점이 '부여성', 서남 종점은 '해(海·바다)'이며, 그 길이가 천여 리에 달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서남 종점인 '해(海·바다)'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요동반도의 끝 다렌(비사성)으로 보는 것</p>	<p>성곽 표시를 삭제하고 점선 등으로 표시, 천리장성의 서남 출발점을 요동 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p> <p>* 지도 하단에 추가할 내용 천리장성은, 현재의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 하구까지 토축 성벽을 축조하였다는 설, 오늘날 랴오닝 성 시평 성자 산산성에서 랴오동 반도 남단인 다렌 대흑산산성(비사성) 사이에 있었던 기존 산성을 연결하였다는 설이 있다.</p> <p>* 사진 설명 추가 : 득리사 산성 위치 정보</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이 통설이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리장성의 서남 출발점을 요동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p>	<p>~~모습이다. 라오동 반도의 비사성에서 건안성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p> <p>* 지도에서 추가 수정 사항 -지도에 성자산산성 표시 -범례를 수, 당과의 전쟁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시 기준으로 정렬함.</p> <p>[수와의 전쟁] 고구려의 선제 공격(598) 수의 침입과 전투지(612) [당과의 전쟁] 천리 장성 추정지 당의 침입과 전투지(645) 고구려의 항전</p>
25	금성출판사 70	[사진·삽화] ▪ 아프리카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진	아프리카시아브 궁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이 고구려 사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고구려 사진으로 추정됨’	아프리카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진(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어서 고구려 사진으로 보고 있다.
26	금성출판사 419	[참고 자료 및 특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허구성 그러나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u>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u> 한국에 반환하였다.	① 독도통합표준홍보 지침에 따라 용어 수정 필요 예시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u>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 677호</u> ” ②“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라는 표현이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 사료에 충실하여 수정 필요 예시 :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독도를 통치 및 행정	더 알아보기 5~7행 그러나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u>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로 독도를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u> 한국에 반환하였다. 더 알아보기 사진 제목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의 부속 지도(1946)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27	미래엔 149	[탐구 활동] “자녀 균분 상속”에서 “차 등 상속”으로 수정	① 제시된 도표에는 통계적으로 1750~1850년 기간에 제목과 같은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상속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표 교체 필요 ② 자료를 제시할 경우 출전 표기 필요	자료 교체 <탐구 활동>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 <자료 1> 여성의 재가 금지 세상의 도덕이 날로 나빠진 뒤로부터 여자의 덕이 정숙하지 못하여 사족(士族)의 딸이 예의를 생각지 아니해서 혹은 부모 때문에 절개를 잃고, 혹은 자진해서 재가하니, 한갓 자기의 가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성현의 가르침에 누를 끼친다. …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라. - “성종실록” - <자료 2> 재산 상속 우리 집안은 일찍이 제사의 기본 방침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따르게 하였다. 정으로 본다면 아들과 딸은 차이가 없으나 딸은 부모 봉양과 제사가 없으니 어찌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딸은 삼분지일만 주어도 되니 … - “부안김씨우반고문서” -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를 말해 보자. [자료 2]와 같은 재산 상속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아 보자.
28	미래엔 330 ~ 33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단원 주제 제목 표기 -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1년 전부터 부정 선거를 준비하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	소주제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 정치
29	비상교육 346	[참고자료·특집] ▪ 광복과 국토 분단 : 광복 직후 상황 자료 제시 - 소련 치스차코프 포고문과 미국 맥아더 포고령 단순 비교	추가된 설명글이 포고문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표면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민위원회를 조정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 점 등 추가 설명	치스차코프 포고문에는 소련이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련은 인민 위원회를 통해 38도선 이북 지역에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입장이었다.
30	천재교육 255	1920년대 들어 ... 밀려 들어왔다. 한편, 이 무렵 경성방직과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	경성방직(1919년 설립), 평양메리야스 공장(1906년 경 설립) 등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맞도록 수정 필요 예시 : “한편, 이 무렵 ...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부분을 소주제 처음으로 이동하고, “평양 메리야스 공장과 경성 방직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로 수정	(본문의 서술 표현 보완) 한편, 이 무렵 <u>평양 메리야스 공장과 경성 방직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u> 미약하게나마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 <u>1920년대 들어</u> 회사령이 폐지되자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1923년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자 일본 상품이 대량으로 밀려들어 왔다.